

참고자료 1. 전기사업법 중 개정 법률(안) 입법예고 개정요지

가. 특정전기사업자제도 도입 및 전기직공급 확대

- “특정전기사업”을 전기를 발전하여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“특정전기사업자”를 특정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함.
-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특정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당해 공급지점을 포함하는 구역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사용자의 이익저해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함.
- 특정전기사업자의 준비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- 발전사업자의 동일구내 겸업설비 및 자체사원용 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전기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받은 전기를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직공급 범위를 확대함.
-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지점에 대한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를 해제하고 당해 공급지점에서의 특정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를 신설함.
- 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신고의무와 공급조건 통지의무를 신설함.
- 특정전기사업용에 제공하는 전기에 부족이 생긴 경우, 일반전기사업자가 그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과 그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전기사업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.

○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품질 유지의무 규정을 신설함.

○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규정을 신설함.

나. 기타 전력분야 규제 완화

- 전기사업의 승계신고 기한을 승계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함.
- 저압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를 폐지함.
- 휴지중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을 폐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.

다. 공급조건의 탄력성 부여

-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전기공급규정을 전기공급 약관으로 개칭하여 사적계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일반전기사업자가 작성하여 신고한 선택약관을 소비자가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.

라. 전기설비의 공동사용

- 일반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송배전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설비공동사용약관을 정하여 인가를 받고 그 약관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전기설비의 공동사용을 허용하도록 함.

마.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

-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.
- 일반전기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의 생산전력 및 자가용발전 잉여전력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매하도록 함.
- 전기사업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외국인 진입제한 조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전기사업허가의 취소요건을 보완함.

-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-99호 : 1998. 9. 12 -